

# 발전기금 관리 규정

제정 1989. 4.18

개정 2001. 6. 1

개정 2005. 7. 6

개정 2018.10.18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에 무상으로 출연(出捐)되는 발전기금(이하 ‘기금’이라 한다)의 관리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8.10.18)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내·외부단체(기관)나 개인이 본 대학에 출연하는 모든 기금에 적용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2018.10.18)

1. “기부금”이라 함은 교육, 연구, 장학 등 대학의 발전을 위해 본 대학에 무상으로 출연되는 현금과 현물 등을 말한다. (개정 2018.10.18)

2. “기금”이라 함은 특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여 두는 기부금 및 기부금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말한다. (개정 2018.10.18)

제4조(기금의 종류) 기금은 그 용도와 사용범위에 따라 구분하며, 세부사항은 관련 지침에 따로 정한다. (개정 2018.10.18)

1. 삭제 (개정 2018.10.18)

2. 삭제 (개정 2018.10.18)

제5조(기부금접수 및 관리) ① 내·외부단체나 개인이 본 대학에 출연하는 모든 기부금의 접수는 기획처장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(개정 2018.10.18)

② 삭제 (개정 2018.10.18)

③ 현물일 경우에는 기획처장은 관련 운영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그 이후의 업무는 운영부서장이 관련 관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. (개정 2018.10.18)

제6조(보고 및 승인) 기부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기획처장은 출연자(出捐者), 출연목적(出捐目的) 및 재산(財産)의 내용에 관하여 지체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

며, 수증여부(受贈與否)는 총장이 결정한다. (개정 2018.10.18)

제7조(영수증의 발급 및 사의 표시) 기부금을 출연한 기부자에게는 관계법규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입금일 기준으로 총장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하며, 기부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조형물 설치 등 적절한 사의(謝意)를 포함 수 있다. 이 사의의 방법은 총장이 정한다. (개정 2018.10.18)

제8조(회계처리) 출연된 기금은 즉시 본 대학 회계에 전입시킨 후에 지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기금의 보존 및 운용) ① 기금은 출연목적의 범위 내에서 운용되고 사용되어야 한다.

② 기금은 운용부서에서 기금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총장의 승인으로 운용한다. (개정 2018.10.18)

③ 기금은 기부자의 기부 목적 달성, 대학의 장기 발전 등을 위해 그 실질 가치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기부자의 명시적 의사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. (개정 2018.10.18)

제10조(기금조성 및 집행결과 보고) 기금관리부서는 기금 조성액과 집행결과를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기부자에게는 요청이 있을 경우 기금의 집행결과를 연차보고서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. (개정 2018.10.18)

제11조(지침) 본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지침으로 정한다. (개정 2018.10.18)

## 부 칙

이 규정은 1989년 4월 18일부로 제정하여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로 이전의 기부금 관리규정(규정명칭 포함)을 개정하여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7월 6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10월 18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.